

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직인

안내사항

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(회수금액), 납부기한, 납부기관 등은 별도로 발송되는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의신청 안내

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